2001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  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1. 5. 30 동두천시장이 제출
   나. 회부일자 : 2001. 6. 5
   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   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   제5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   가. 제안이유
 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연도중시유재산 취득·처분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매각하고자 함.

   나. 주요골자
   ○ 재산의 표시

재산구분	재산소재지	지목 및 구조		면적 (㎡)	매각예정금액
		지목	구조		
잡종재산	합 계				115,464,150
	상봉암동 274-1	대지		661	59,159,500
		건물	철근콘크리트 슬라브	168.7	56,304,650

   ○ 재산의 현황
   ◦ 소요공동작업장 건물
   - 취득년월일 : 1994. 12. 30
   - 목 적 : 소요공동작업장
   - 현 용 도 : 잡종재산으로 태권도장으로 대부
   - 관리상태 : 지하층외 양호
   - 대 부 자 : 최 영 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제37조 규정에 의해 지난 제106회 임시회기까지 취득의결된 공유재산은 토지 67,140㎡(20,334평) 건물 8,875㎡(2,685평)임.

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봉암동 274-1 소재 잡종재산으로 대지 661㎡(100.1평) 건물 168.7㎡(51.0평)에 대해 재산의 대부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"

5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6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